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7 선고 2019가단1154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정정현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6. 26.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9. 6. 26. 접수 제24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원고는 2015. 5. 26. C와 보증금액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5. 5. 26. 원고에게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은 2019. 7. 18.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기업은행은 2019. 8.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재산분할약정

C과 그의 처인 피고는 2019. 2. 14.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았고(울산가정법원 2019호협359호), 2019. 3. 19.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C은 2019. 6. 26. 피고와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C은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C은 그 직후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C과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50:50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양도한 것은 적절한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 피고의 악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적절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적절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부터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D생)과 피고(E생)는 1984. 9. 26. 혼인하여 아들 F(G생)을 두었고, 부산 북구에서 거주하다가

1987. 11. 11. 경남 고성군 H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C은 1991. 5.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1.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C과 피고는

1992. 12. 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1998. 1. 18. 자신이 세대주가 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C은 2003. 3. 20.경부터 울산 울주군 I에서 'J'라는 상호로 아트 벽돌 등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였다. C은 2010. 10. 14. 주식회사 K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80. 8. 16. 신축된 아파트로서 전유부분의 면적은 78.58㎡이고, 2019. 1. 1.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은 9,300만 원이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와 C이 이혼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오랜 기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곳이므로 피고가 가지고, C의 개인사업상 재산과 채무는 C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이를 적절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와 C이 혼인생활을 해 온 과정, 혼인생활의 기간, 피고와 C이 혼인생활에 기여한 정도, 각자 재산의 보유상황과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 현재 경제적 여건과 장래 생계유지수단의 유무, 원고가 C에게 가지는 채권의 내역과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적절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목록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북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북구 대 1479.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조 78.58㎡

(대지권의 표시)

1.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2. 대지권비율 : 147960분의 4227

